

무배당하나트리플적립연금보험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

이 유 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개발을 통해 장기보험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노후대책마련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확 인 서

무배당하나트리플적립연금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2년 11월 일

프 랑 스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확인업무담당계리인 윤 기 수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트리플적립연금보험

1. 보험종목 및 명칭

구 분	연금지급형태	피보험자 범위
(무)하나골드연금 PLAN 보험	종신연금형 [정액, 체증(5·10%)]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 [7·10·15·20 년형]	개인연금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2.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개시연령,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개시연령	보험기간
5년·6년·7년·10년·15년·20년납, 55세·60세·65세납, 전기납	- 개인연금형 : 49 ~ 70 세형 - 부부연금형 : 49 ~ 70 세형	◎ 종신 - 제 1 보험기간 책임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제 2 보험기간 제 1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단,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단,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가입 후 납입기간 경과 이후에 한함.

또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선택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연령은 해당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최고 가입연령을 초과할 수 없음.

3. 가입연령

- 전기납·5년납 : 만 15세 ~ (연금개시연령-6)세
- 기타년납 : 만 15세 ~ (연금개시연령-납기)세
- 기타세납 : 만 15세 ~ (납기-5)세

4.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5. 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1 구좌당 월 5만원 ~ 100만원
 [추가납입보험료 - 연간 기본보험료의 300% 이내로 함.

6.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

7.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월납보험료 × 12 × min { 보험료납입기간, 10 }

8. 연금계약의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1.5%」로 하고,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약관대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② 부리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한다.
- ③ 3년미만 경과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중도해지이율
1년미만	Max(3.0%, 이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4%)
1년이상 2년미만	Max(3.0%, 이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3%)
2년이상 3년미만	Max(3.0%, 이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2%)

9.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10. 부가하는 특약

무배당정기특약,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무배당재해상해특약Ⅱ, 무배당입원특약Ⅲ, 무배당암보장특약Ⅱ, 무배당종신입원특약, 무배당종신사망보장특약, 무배당치매간병특약

11. 기타

가.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전까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5%로 한다.

- ①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 ②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휴업
- ③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④ 계약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 ⑤ 계약자가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⑥ 기타 계약자가 가계생활자금, 학자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립액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단, 이 경우 적립액의 인출은 해약환급금의 25%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 4회에 한함.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1.5%」를 적용하고, 약관대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약관대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된 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라. 동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